

2008. 8. 19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제 목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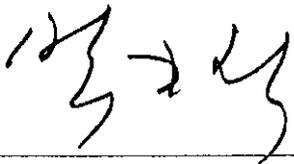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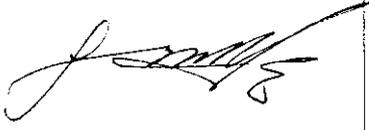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발의자 : 박 기 석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외 6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박기석		
김명섭		
劉永和		
城明重		
石 子 子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조각희	조각희	
양순경	양순경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75
------	------

발의연월일 : 2008. 8. 19.

발 의 자 : 박기석 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운영의 위탁(안 제5조)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 ※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을 준용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함.

○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안 제6조, 안 제7조)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적격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공개모집을 원칙

○ 수탁자의 선정 심사위원회(안 제8조)

- 위원회 구성 : 9인이내(위원장 : 부시장)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고용승계(안 제9조)

-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

○ 위탁기간(안 제10조)

- 위탁기간 : 3년~5년

○ 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안 제11조)

- 위탁업무평가 :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재위탁 가능.

○ 위탁계약(안 제12조)

- 위탁계약 체결 내용
 - 가.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나. 위탁계약기간
 - 다.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라.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마.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 지원(안 제13조)

-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도·감독·감사(안 제15조)

-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을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붙임 1.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여성복지관리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 민간위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시설
5. 여성복지시설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
로 지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적격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
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위탁기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공고할 수 있다.

③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
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3. 지역주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사회복지관련 등 공익적 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④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각종 위탁 신청 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⑧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설위탁심사를 하고자 할 때 10일 전 까지 위촉하고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관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위탁공고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 ①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함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

②평가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평가는 수탁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구성 방법 및 운영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감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을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별표 1]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 성	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4) 관련 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	1) 조직구성 (1) 시설장의 인적 사항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재 정 (1) 재정운영계획 (2) 재정투자계획 (3) 재정확충방안 3)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4)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1. 수탁자의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 - 법인대표 및 이사회직 적합성 - 해당 법인의 복지사업 운영실적 	20%
2. 시설운영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강화 방안 	40%
3. 시설운영의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20%
4. 시설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10%
5.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10%

[별표 3]

재위탁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문항	평가지표
조직 및 관리	1)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①법인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과 다양성
	2)운영위/자문위 구성의 적절성과 운영 규정의 시행여부	①운영자문위 구성과 활동의 적절성/실제성 ②운영규정 및 복부규정의 적절성/준수정도
	3)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	①전산처리에 의한 이용자 관리실태/활용도
	4)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의 적절성	①상담실, 안내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배치 적절성
인력 및 재정관리	1)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	①전체직원중 사회복지사의 비율, 전문가자격증, 경력 ②직원채용의 공개성과 합리성
	2)기관장의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①기관장의 철학 및 전문성 ②기관장의 업무장악력 및 리더쉽
	3)법인과 사회복지관의 재원조달 능력	①정부보조금 대비 법인부담금의 비율 ②정부보조금 대비 자체개발 후원금의 비율
	4)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	①재정 지출의 적정성 ②회계 장부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상태
	5)민간재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	①민간 및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수혜정도 ②후원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결과보고의 적절성
프로그램	1)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성 정도	①욕구조사 실시여부 ②욕구조사의 질적 수월성과 프로그램 반영 정도
	2)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	①단위사업의 목표 설정과 기획의 전문성 ②프로그램 수행과정의 적절성과 기록의 작성 정도
	3)전문프로그램의 수행실적 정도	①상담사업의 실적 및 질적 수준 ②프로그램의 수행 실적
	4)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의 실적	①저소득층 대상사업의 수와 질적 수준 ②지역특성 사업의 수와 질적 수준
지역사회 관계	1)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	①각종 시설활용 행사 및 대관사업 실적
	2)지역사회 조직 활동	①지역사회 주민 조직화의 정도 ②기관장과 직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실적
	3)복지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	①홍보지 발행횟수와 질적 수준 ②언론 및 매스컴의 홍보 실적
	4)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	①자원봉사자 교육, 홍보, 관리의 실적 ②전문자원봉사자의 수와 활동 실적
위탁 (재위탁)조건 이행	1)(재)위탁 조건이행 정도	①법인부담금의 이행정도 ②기타 운영에 관련된 조건 이행 정도
	2)지도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정도	①지도점검시 지적 정도 ②지적사항 개선정도
	3)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	①수상회수 ②선행사례 언론보도 회수

평가영역	평가문항	배점
조직 및 관리	1)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5
	2)운영위/자문위 구성의 적절성과 운영규정의 시행여부	5
	3)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	5
	4)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의 적절성	5
인력 및 재정관리	1)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	5
	2)기관장의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5
	3)법인과 사회복지관의 채용조달 능력	5
	4)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	5
	5)민간재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	5
프로그램	1)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성 정도	5
	2)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	5
	3)전문프로그램의 수행실적 정도	5
	4)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의 실적	5
지역사회 관계	1)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	5
	2)지역사회 조직 활동	5
	3)기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	5
	4)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	5
위탁(재위탁) 조건이행	1)위탁(재위탁) 조건이행 정도	5
	2)지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정도	5
	3)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	5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第34條 (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施設(이하 "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施設은 필요한 경우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하여 运营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規定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3조 (시설의 위탁)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